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인과세 부분

2015. 8. 6.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법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안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공제금액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x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 (*)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현행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동시 적용
적용시기	201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적용

2.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재편계획(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시 세제를 지원하고자 조특법 제121조의 26(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안
①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 교환시 특례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 주식교환시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교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6 준용
②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 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특례	•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처분, 취득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7의 4 준용
③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 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 채무를 인수·변제시 특례	• 모회사 :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 자회사 :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자회사 등 주주 :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39 준용
④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 채무 상환자금 총당시 특례	•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금융채무 상환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34 준용
⑥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 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는 경우 특례	• 면제법인 :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분할익금산입, 손금산입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4 준용
사후관리	• 다음의 사유 발생시 기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 -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 폐업 또는 해산 - 기준부채비율의 증가 등
적용기한	• 2018. 12. 31.

동 개정안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과세 합리화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비용 인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6호 신설)

구 분	개 정 안
적용대상차량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 (*)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승용차 관련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비용 인정기준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i)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 을 통해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ii) 기업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를 부착한 승용차는 운행일지 등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인정 ②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 모든 법인
소득처분	•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동 개정안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4.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고용요건 없이 지원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인하하는 한편 R&D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특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 2)

현 행	개 정 안
■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 대기업 3%, 중견 5%, 중소기업 10% • 생산성향상시설 : 대기업 3%, 중견 5%, 중소기업 7% ■ R&D설비 투자세액공제 • 적용기한: 2015. 12. 31.	■ 공제율 인하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 대기업 1%, 중견 3%, 중소기업 6% • 생산성향상시설 : 대기업 1%, 중견 3%, 중소기업 6% ■ R&D설비 투자세액공제 • 적용기한: 2018. 12. 31.

5. 국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 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에서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도록 하고 국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세지방세조정법 제6조 및 제7조)

구 분	개 정 안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공유	•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 경정
중복 세무조사의 금지	• 국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동 개정안은 2016. 1. 1. 이후 결정·경정, 세무조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 10년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 일반기업 : 당해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 : 당해연도 소득의 100% (현행유지) ■ 연간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동 개정안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조 준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13 | E-Mail. ccho@shinkim.com |
|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 TEL. 02 316 4219 | E-Mail. ihchung@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